

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·고시합니다.

2023년 12월 27일

국토교통부장관

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(2023~2027) 고시

□ 계획 수립의 근거 및 목적

- 법적근거 :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계획 수립의 목적
 -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·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5년 단위의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수립
 - 국내 물류시설 현황을 분석하고, 물류산업 여건 변화 및 해외 동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진 전략을 마련

□ 계획의 범위

- 계획기간 : 2023년 ~ 2027년 (5년)
- 계획의 주요내용
 - 물류시설의 공급정책 등에 관한 사항

- 물류시설의 지정·개발에 관한 사항
- 물류시설의 기능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
- 물류시설의 공동화·집단화에 관한 사항
- 물류시설의 국내 및 국제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
- 기타 물류시설의 환경보전·관리에 관한 사항 등

□ 수립내용

- 계획의 비전 : 편리한 일상과 신산업으로 도약을 위한 첨단 물류 인프라 구축
- 추진전략 : 도시물류시설 확충, 시설 첨단화 등 6대 전략 마련
 - 1) 도시물류 인프라 확충
 - 2) 기존 물류시설 재정비
 - 3) 지역 격차 없는 물류서비스 제공
 - 4) 물류시설의 스마트화
 - 5)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물류체계 구축
 - 6) 국제물류허브 기반 조성
- 주요 추진과제
 - 1) 빠른 배송을 위하여 '27년까지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200개소 이상 설치
 - 2) 내륙물류기지 재정비 및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활성화 방안 마련
 - 3) 2007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수요 검증 체계 현실화

□ 기타 사항

-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(<http://www.molit.go.kr>) 뉴스·소식의 공지사항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(044-201-401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